

1. 개정이유

내구연한이 도래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를 장비규모(정격하중)에 따라 구분하여 현실화하고 진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명확한 검사 부적합·구조변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검사대행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기준 및 법정 등록신청서 등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표 미봉인, 와이어로프 불량 등에 대한 명확한 검사 부적합 기준 마련(안 제23조)

- 1) 등록번호표 미봉인, 홀의 과도한 변형 등 부적합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함

나.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기준 강화(별표 9)

- 1) 초음파두께측정기, 전류측정기 등 검사 필수장비를 구비토록 하고,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검사원 경력 강화(7년→9년)

다.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제33조, 별표10)

- 1)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민간대행업체)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 실시

라. 내구연한이 도래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 강화(안 별표 13의3)

- 1) 정밀진단 기준을 강화(허용공차로부터 지름 1밀리미터 미만)하여,

과도한 변형 등 안전문제가 있는 장비사용 원천 차단

마.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서 마련(안 제74조, 별표 19)

-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장비, 인력기준 등 시설 및 인력요건을 규정하고, 지정신청서 등 법정 양식을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 강화

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 경감(안 별표 23)

- 1) 기존 규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수수료(836만원)를 정격하중에 따라 세분화하여 수수료 경감

사. 타워크레인 등록·검사증에 소형·일반 구분란 마련 및 검사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2호의2)

- 1)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규격 마련('20.7)에 따라 장비별 소형·일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등록증에 소형·일반 구분란을 마련하고, 검사기재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란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협의 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차대번호가 새김된 틀(구조체)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할 때 첨부한 건설기계제작증에 부착된 새김압형이나 법 제11조에 따라 새김을 한 새김압형을 등록원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또는”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받은 경우에는”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의2 중 “등록번호표를”을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주행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권상장치·유압장치”를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주행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권상장치·와이어로프·유압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체결된”을 “체결되었거나 홀에 변형이 과도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23조제2항의 각 호의 구비서류 내용과 다른 경우

제3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4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선회장치의 형식변경

제5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2조의3”을 “영 제12조의4”로 한다.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9와 같다.

제8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 소지자에 한정한다) 별표 8 제5호하목(8) 중 “「항공법」 제83조”를 “「공항시설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목 (1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2)(바) 중 “교체 여부”를 “체결상태”로 한다.

(11)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

1.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을 제외한다) 검사대행자

가. 시설보유기준

구 분	명 칭	제 원 등
대지 및 건물	대지 건물	옥외검사장, 검사대기장 660㎡ 이상 사무실, 옥내검사장, 공구실 등 180㎡ 이상
부대시설	검차대 검사용차량	
전산시설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것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할 것 건설기계등록·검사관리가 가능할 것
기계·기구	전조등시험기	40,000칸델라 이상
	유압계	300kg/cm ² 이상
	엔진압축시험기	70kg/cm ² 이상
	제동시험기	10톤 이상
	속도계시험기	10톤 이상, 120km/h 이상
	매연측정기(고정식)	0 ~ 100%
	매연측정기(휴대용)	0 ~ 100%
	소음측정기	120dB 이상
	볼트암페어미터	
	사이드슬립(side slip: 측면 미끄러짐) 측정기	
	진공게이지	
	디젤rpm미터(분당회전수 측정기)	5,000rpm 이상
	축중계(軸重計: 하나의 축이 받는 무게를 재는 기계)	10톤 이상
	내시경	휴대용
	경사각도측정계	90° 이상
	타이어게이지	
	온도측정기	300℃ 이상
	비파괴시험장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비고: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시설·검사기계 및 기구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 분	보 유
1) 책임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기계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건설기계검사원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2) 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문대학 이상에서 기계분야를 전공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비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해야 하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중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은 "자동차정비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으로, "건설기계검사원"은 "자동차검사원"으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각각 갈음할 수 있다.

2.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가. 시설보유기준

구 분	명 칭	제 원 등
건물	사무실	60㎡ 이상
전산시설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것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할 것 건설기계등록·검사관리가 가능할 것
기계·기구	와이어로프테스터 라인 스피드 미터(line speed meter: 레이저, 빔 등을 이용한 비접	

	축 방식의 엔진 분당 회전수 측정기) 진동측정기 비파괴시험장비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전류측정기 내시경 경사각도측정기 틈새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	---	--

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 분	보 유
1) 책임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검사원 가)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학교 이상에서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졸업하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별표 9]

[별표 10]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	지정취소	-	-

지정을 받은 경우	제3항제1호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3항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	법 제14조 제3항제3호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지정취소
라.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14조 제3항제4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14조 제3항제5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13의3]

정밀진단의 기준(제56조의12제3항 관련)

1. 공통적인 기준

가. 별표 8의 건설기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요구조 부재에 대한 기준

진단대상	진단내용	진단방법
가. 베이지크 마스트 나. 마스트(마스트 후크를 포함한다) 다. 턴 테이블(스윙기어 및 고정볼트를 포함한다) 라. 프론트 지브(Jib: 크레인에서 물건을 매다는 팔 모양의 가로대의 긴 부분) 마.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 바. 캣 헤드(Cat Head: 프론트 지브와 카운터 지브를 연결하는 부재) 사. 연결 볼트 및 핀	1) 외관 검사 2) 비파괴 검사	가) 심하게 손상, 마모 또는 부식된 것이 없는 지 확인 나) 심하게 변형된 것이 없는 지 확인 다) 모재(母材: 용접물)의 절취부 및 용접부의 상태가 양호한 지 확인 가) 연결볼트 또는 핀으로 분리가 가능한 주요 구조물의 단위부재별 3개소 이상에 대한 비파괴시험 실시 나) 연결볼트 또는 핀은 무작위 추출을 하거나 최장기간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마스트의 연결 볼트·핀 20%와 그 외 연결 볼트·핀 10%를 선정하여 육안조사 및 비파괴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실시 다) 비파괴시험의 측정점은 제작사에서 정

아. 시브(Sheave: 도르레) 자. 혹 블록 차. 감속기 기어 및 축 카. 트롤리 타. 모터 및 브레이크 감속기 파.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e) 하. 조종실(제어부, 비상정지버튼을 포함한다) 거. 타이바(Jib 과 Counter Jib를 Top Tower에 연결하는 부재) 너. 균형추	3) 볼트 또는 핀 이음부의 변형 검사	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시하고,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안조사 결과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용접으로 인한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개소 및 모재의 절취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 라) 비파괴시험의 방법은 자분탐상시험(MT), 침투탐상시험(PT) 및 초음파탐상시험(UT) 등 측정점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 가) 연결부 구멍의 지름이 지압응력(支壓應力: 두 물체의 접촉면에 압력이 가해질 때 생기는 내부 저항력)으로 인한 변형이 형식도면에 표기된 구멍의 허용공차로부터 지름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나) 마스트의 수직부재에 압축응력이 작용할 때 수직부재 간 유격이 발생되지 않는 지 확인
--	-----------------------	--

비고

1. 정밀진단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비파괴검사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그 비파괴검사로 2)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형식도면이 없거나 도면에 구멍의 허용공차가 표기되지 않는 장비에 대해 볼트 또는 핀 이음부의 변형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형식의 도면에 표기된 구

명의 허용공차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유압장치에 대한 기준

진단대상	진단내용	진단방법
가. 인상장치의 유압실린더	1) 유압장치 작동	가) 실린더 로드 스크래치, 부식 및 파손을 확인
나. 인상장치의 유압펌프	및 외관	나) 실린더 튜브 용접, 크랙, 부식, 도장상태 등을 확인
다. 유압공급 호스 및 관로, 밸브류	검사	다) 인상 및 유압장치의 작동이 균일하게 유지되는 지의 확인 라) 유압펌프의 토출압력 및 유량이 제작사의 성능기준 이상을 확보하는 지 확인 마) 유압의 작동 시 누유, 이상음 발생, 흔들림, 변형 등 이상 유무 확인

4. 전기장치에 대한 기준

진단대상	진단내용	진단방법
가. 전기 시스템 및 전자 접촉기	1) 전기장치 작동	가) 접촉단자의 풀림, 탈락, 손상 여부를 확인
나. 전기장치 접촉단자	및 외관	나) 피복손상 여부를 확인
	검사	다) 절연저항 확인 라) 브러시의 마모 여부를 확인

[별표 14]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제59조 관련)

구 분	일 반	개 별
1. 건설기계대수	5대 이상(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대 이하
2. 사무실 설비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는 것	없 음
3. 주 기 장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text{m}^2 \times (\text{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0.815} + 80\text{m}^2 \times (\text{타워크레인대수})^{0.815}$	

비 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 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무한궤도식 및 드럼 등 기타방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

- 7.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산정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8.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9.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제61조 관련)

구 분	명칭	제원 등	종별 내역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중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		원동기	유압	타워 크레인
대지 및 건물	1. 옥내작업장 면적	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 등	1,000제곱 미터이상	300제곱 미터이상	300제곱 미터이상	300제곱 미터이상	300제곱 미터이상	300제곱 미터이상	495제곱 미터이상	230제곱 미터이상	40제곱 미터이상
	2. 옥외작업장 면적	작업장, 주기장 등	1,460제곱 미터이상	670제곱 미터이상	670제곱 미터이상	670제곱 미터이상	670제곱 미터이상	670제곱 미터이상	330제곱 미터이상	430제곱 미터이상	-
부 대 시 설	1.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1톤 이상 (타워크레인은 제외) 유수분리장치 포함	5톤 이상	3톤 이상	3톤 이상	5톤 이상	3톤 이상	2톤 이상	2톤 이상	1톤 이상	1톤 이상
	2. 트럭(이동정비용)		○	○	○	○	○	○	○	○	○
	3. 폐유처리시설		○	○	○	○	○	○	○	○	-
	4. 검차대 또는 리프트		○	○	○	○	○	○	-	-	-
정 비 기 계 류	1. 트랙(링크)·프레스 (임팩트렌치를 포함한 다)	150톤 이상	○	○	-	○	-	-	-	-	-
	2. 트랙링크 용접기	100톤 이상	○	○	-	○	-	-	-	-	-
	3. 롤러아이들러 프레스		○	○	-	○	-	-	-	-	-
	4. 롤러아이들러 용접기		○	○	-	○	-	-	-	-	-
	5. 유압잭	이동식 10톤 이상	○	○	○	○	○	○	-	-	-

	6. 전기용접기	10KVA 이상(타워크레인 3KVA 이하)	○	○	○	○	○	○	-	-	○
	7. 선반	1,000mm 이상	○	○	○	○	-	○	-	-	-
	8. 공기압축기	7kg/cm ² 이상	○	○	○	○	○	○	-	-	○
	9. 부품세척기		○	○	○	○	○	○	○	○	○
	10. 실린더보링머신		-	-	-	-	-	-	○	-	-
	11. 라인보링머신		-	-	-	-	-	-	○	-	-
	12. 유압베어링 풀러	10톤 이상	-	-	-	-	-	-	-	-	○
	13. 탁상드릴		-	-	-	-	-	-	-	-	○
	14. 탁상그라인더		-	-	-	-	-	-	-	-	○
	15. 터미널압착기		-	-	-	-	-	-	-	-	○
검사 시험 기	1. 전조등시험기		○	-	-	○	○	-	-	-	-
	2. 유압계		○	○	○	○	○	○	-	○	-
	3. 압축시험기		○	○	○	○	○	○	-	-	-
	4. 제동시험기		○	-	-	-	○	-	-	-	-
	5. 분사펌프시험기 또는 전자제어 엔진진단기	15톤 이상	○	○	○	○	○	-	-	-	-
	6. 노즐시험기		○	○	○	○	○	-	○	-	-
	7. 정반		○	○	○	○	-	○	○	○	-
	8. 배연농도측정기	0~100% 측정용 또는 광투과식	○	○	○	○	○	-	-	-	-
	9. 속도계시험기	15톤 이상 120km/h 이상	○	-	-	-	○	-	-	-	-
	10.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	-

- 17 -

	11. 조속기봉인기		○	○	○	○	○	-	-	-	-
	12. 절연테스터기		-	-	-	-	-	-	-	-	○
	13. 접지저항기		-	-	-	-	-	-	-	-	○
	14. 전류측정기		-	-	-	-	-	-	-	-	○
	15. 전기테스터기		-	-	-	-	-	-	-	-	○
공 구	1. 밸브시트커터		○	○	○	○	○	-	○	-	-
	2. 밸브가이드리머		○	○	○	○	○	-	○	-	-
	3. 토크렌치		○	○	○	○	○	○	○	○	○
	4. 버어니어캘리퍼스		-	-	-	-	-	-	-	-	○
기 술 자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	-	-	-	-	-	-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 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 자격자로서 대체할 수 있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기능사가 2명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건설기계정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정비협회의 교육훈련기관에서 3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105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은 실무경력 요건을 먼저 갖춘 후 이수해야 한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8 -

7.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8. 기술자의 사망, 실종, 퇴직 및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체 기술자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9]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74조제3항 관련)

구 분	강의실(m ²)	이론교육 강사(명)	조종실습 강사(명)
지정 요건	50	1	2

비고

1.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이론 및 실습시간의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섹식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또는 준설선에 대해서는 실습장이 아닌 해당 건설기계가 설치된 다른 장소에서 실습을 할 때에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교육기관은 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육기관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를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4. 이론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건설기계운전)이 있는 사람
5. 조종실습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 조종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굴착기, 로더, 지게차, 불도저, 천공기 및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습 강사는 해당 기종 중 상위규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도 실시할 수 있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제74조제2항 관련)

소형건설기계	교육 내용	시간
1.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게차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2(이론) 6(실습)
2.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및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2(이론) 12(실습)
3.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2(이론) 12(실습)
4. 공기압축기, 쇠적기 및 준설편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유압 및 작업장치 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작업 안전 다. 장비 취급 및 관리 요령 라. 조종실습	2(이론) 4(이론) 2(이론) 12(실습)
5.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가.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나. 양중작업 일반 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일반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4(이론) 12(실습)

비고

1.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로 하고, 교육생 1명이 1대의 장비에 규정된 시간을 탑승·승선하거나 건설기계의 조종작업을 위한 정상적인 조종위치에서 조종실습을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강사가 담당한다.
2. 조종실습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조종실습을 할 수 없다.
3. 이론 및 실습 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4. 위 표의 굴착기, 불도저, 로더 및 천공기의 규격은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능력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규격은 정격하중으로 한다.
5.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및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은 면제한다.

6.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조종실습 이후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실기시험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및 채점기록 등의 자료를 시험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별표 23]

수수료 등(제93조 관련)

종 목	금 액
1.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신청	1대에 대하여 4,000원
2.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1대에 대하여 1,000원
3.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1대에 대하여 1,000원
4.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갑, 을부) 또는 초본(갑부)의 발급·열람 신청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등본 발급 1건에 대하여 500원 초본 발급 1건에 대하여 500원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5. 건설기계검사(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검사	
1) 최초등록	1대에 대하여 165,000원
2) 재등록(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3) 재등록(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57,800원
나.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1)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제동장치정비확인서 첨부 시 57,800원)
2) 정기검사(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57,800원
3) 수시검사(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4) 수시검사(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57,800원
다.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변경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구조변경검사)	
1) 정격하중 2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176,000원
2) 정격하중 20톤 이상 20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176,000원에 20톤을 초과하는 10톤마다 3,300원을 가산한 금액
3) 정격하중 200톤	1대에 대하여 314,600원
4) 정격하중 200톤 초과	1대에 대하여 314,600원에 200톤을 초과하는 10톤마다 4,4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신청 또는 형식신고	
가. 형식승인	1형식에 대하여 572,000원
나. 형식변경승인	1형식에 대하여 286,000원
다. 형식신고	1형식에 대하여 462,000원
라. 형식변경신고	1형식에 대하여 231,000원
마. 동일형식수입신고	1형식에 대하여 231,000원
7. 건설기계의 형식 확인검사 신청	
가. 최초형식 확인검사	1대에 대하여 415,800원
나. 변경형식 확인검사	1대에 대하여 293,700원
8.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가. 정격하중 2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2,09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859,500원)
나. 정격하중 20톤 이상 20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4,18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1,546,600원)
다. 정격하중 200톤	1대에 대하여 6,27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2,069,100원)
라. 정격하중 200톤 초과	1대에 대하여 8,36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2,503,400원)
9. 건설기계 부품인증 또는 부품인증 변경 신청	1부품에 대하여 495,000원
10.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30,000원
11.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5,000원
1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재개 신고	500원
1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신청	2,500원
14.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2,500원
15.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32,000원
16.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사업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500원
1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2,500원

비고

- 제9호 부품인증을 위한 단계별 심사 및 검사에 필요한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기계 신규등록·등록사항 변경·등록말소·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갑부)의 발급·열람·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비영업용은 소유자의 주소, 영업용은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형식승인번호
제작년도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OOOO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주의사항 :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의 경우 소유자 주소, 영업용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지입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도		시·도		시·도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건 설 기 계				☐ 등록증 ☐ 검사증
발급번호:		최초등록일:		제작년도:
등록사항	건 설 기 계 의 표 시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규 격	
	원동기 및 형식		차대일련번호	
	사용본거지(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소 유 자 의 표 시			
	성 명(법인명)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1. 주 요 계 원

형식승인번호 :

길 이	mm	너 비	mm
높 이	mm	총 중 량	kg
주행방식		정격출력	PS/RPM
기 통 수	기통	연료종류	

2. 저 당 권 등 록 사 실

구분(설정 또는 말소)	일자

* 그 밖의 저장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를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작 업 장 치

※ 기종별 작업장치 표시

최고속도(90km/h) 제한장치	설치 ()
대형건설기계 표지	설치 ()
※ 대형건설기계는 도로운행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운행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분해 후 이동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
-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시·도지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앞 쪽)

건설기계(타워크레인) ☐ 등록증
☐ 검사증

발급번호: 최초등록일: 제작연도:

등록사항	건설기계의표시			
	건설기계명	타워크레인	등록번호	
	형식		규격	
	원동기 및 형식		차대일련번호	
	사용본거지(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소형/일반 구분	
	소유자의표시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 또는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4. 건 설 기 계 검 사 관					5. 등 록 사 항 변 경 관			
구 분	검사일	유효기간 (까지)	검사기관	담당자 성명	연 번	변경일자	변경사항	확 인
신규등록일 :								
*주의사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 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수입건설 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 다.								

1. 주 요 제 원			
형식승인번호:			
최대정격하중		ton	
설치형식			
전동기	형식		
	출력	kW	
	전압	V	
	전류	A	
2. 저 당 권 등 록 사 실			
구분(설정 또는 말소)		일자	
* 그 밖의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를 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작업장치		
선회속도	rev/min	
봄(지브)형식		
혹 상승속도	m/min	
지브(봄) 최대각도		
지브길이	메인	m
	카운트	m
마스트	규격	가로 m× 세로 m× 높이 m
	기본	단수 m
최대설치높이	m	
카운트 웨이트총량	ton × 개	
최소작업반경	m	
최대작업반경	m	
기타		

210mm×297mm [백상지(150g/㎡)]

(뒤 쪽)

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과태료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
-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과태료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

건설기계(타워크레인)**등록·검사증****시 · 도 지 사****4. 건 설 기 계 검 사 란**

구 분	검사일	유효기간 (까지)	검사기관	담당자 성명
신규등록일: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주의사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 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2. 건 설 기 계 검 사 란

구 분	검사일	유효기간 (까지)	검사기관	담당자 성명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그 밖의 건설기계 검사내용은 다음 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앞 쪽)

4-3. 건 설 기 계 검 사 란

구 분	검사일	유효기간 (까지)	검사기관	담당자 성명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4-4. 건 설 기 계 검 사 란

구 분	검사일	유효기간 (까지)	검사기관	담당자 성명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4-5. 건 설 기 계 검 사 란

구 분	검사일	유효기간 (까지)	검사기관	담당자 성명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검사장소				

5. 등 록 사 항 변 경 란

연 번	변경일자	변경사항	확 인

210mm×297mm[백상지(150g/㎡)]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건설기계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건설기계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번호		매매금액	일금 원정	
건설기계명		계약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형식		중도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차대번호		잔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최초등록일	년 월 일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비용	일금 원정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하자담보책임) 건설기계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갑”을 대리하여 이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하여 “을”에게 알려야 하며,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보증기간 중 인수일부터 보증일 이내에 보증거리를 초과하거나 보증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①보증기간: 인수일부터 ()일 또는 () km 또는 () hr ②보증내용: ()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를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 요건의 미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해약금) “갑”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등록지체책임) 매매업자는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등록사항변경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나 권한을 위임한 후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대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을 소지하고,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을 소지한다. 특약사항				
계약연월일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성명(명칭) 주인(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인감날인) (전화:)	
	양수인(을)	성명(명칭) 주인(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인) (전화:)	
	건설기계매매업자	허가번호 및 상호	제 호	제 호
		대표자	직인	직인
		취급자	(인)	(인)
※ 주의사항 1. 이 양도증명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 []에는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시설 확보	이론교육시설(□ 자체 □ 임차) 실습교육시설(□ 자체 □ 임차)		
신청인 구분	☐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그 밖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조종실습 신청기종	신청기종 보유현황	신청기종 실습강사
	☐ 3톤미만의 굴착기	[] 대	[] 명
	☐ 3톤미만의 로더	[] 대	[] 명
	☐ 3톤이상 5톤미만의 로더	[] 대	[] 명
조종실습 교육장	☐ 3톤미만의 지게차	[] 대	[] 명
	☐ 5톤미만의 불도저	[] 대	[] 명
	☐ 콘크리트펌프(이동식 한정)	[] 대	[] 명
	☐ 5톤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 대	[] 명
	☐ 공기압축기	[] 대	[] 명
	☐ 채석기	[] 대	[] 명
	☐ 준설선	[] 대	[] 명
	☐ 3톤미만의 타워크레인	[] 대	[] 명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1부
	가.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기관의 건물에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관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교육기관 조종실습기종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신청기종별)
	4. 감사 이력서 및 증빙자료 사본 각 1부(이론교육, 조종실습 신청기종별)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원장(설립·운영자가 원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원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3. 교육기관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차대번호가 새김된 틀(구조체)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할 때 첨부한 건설기계제작증에 부착된 새김압형이나 법 제11조에 따라 재새김을 한 새김압형을 등록원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생략) ②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신 설>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중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1. ~ 11. (생 략) <신 설>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선회장치의 형식변경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부품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와 법 제20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인증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건설기계 부품인증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등) ① ----- 영 제12조의4----- ----- ----- ----- ----- -----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9와 같다.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 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 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 만의 지게차 면허 소지자에 한정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